

[별표2]

##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(제11조 관련)

구 분		내 용	비 고
일반		1. 전통한복·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2. 상의(저고리)와 하의(치마, 바지)를 기본으로 함 단,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상·하의를 갖춰 입어야 함 ※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 (과도한 노출 등 금지)	
세부	저고리	3. 여미는 깃 형태 유지 고름·매듭 방식은 관계 없음	
	바지	4.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	
	치마	5. 통치마·풀치마 등 형식 제한 없음	